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91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권성동・박정하・이만희

엄태영 · 김장겸 · 최은석

이철규 · 윤한홍 · 김재섭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5조 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9항 전단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을 "아니한"으로 한다.

제4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 |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 | 9 | | |
| 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 | | | |
| 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 | | |
|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u>아니</u> | <u>아니한</u> | | |
| <u>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u> 게임 | | | |
|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 | | | |
| 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 i | | |
|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 | | | |
| 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 | |
|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 | | |
|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 |
| ⑩·⑪ (생 략) | ①·① (현행과 같음) | | |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45조(벌칙) |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 | | |
|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 | |
| 의 벌금에 처한다.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7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 | |
| |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사항을 | | |
| | 거짓으로 표시한 자 | | |
| 8. ~ 11. (생 략) | 8. ~ 11. (현행과 같음) | | |